

현장과학교육 투고 규정

제 1 조 (목적)

현장과학교육은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연구를 활성화하고 현장과학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은 ‘결론 및 제언’으로 통합해서 기술할 수 있다.)
(5) 참고문헌
(6) 도표
(7) 그림

제 2 조 (발간 주기)

현장과학교육은 1년에 2회, 2월 28일과 8월 23일에 발행한다.

제 3 조 (투고 내용)

1. 투고 원고의 내용은 초중등 학교 및 대학교의 과학 교육과 관련된 현장과학교육 연구논문과 교육자료를 포함한다.
2. 현장과학교육 연구논문은 과학탐구, 실험실습, 교수학습 자료, 교육과정, 교수법, 현장과학교육이론 등을 포함하며, 연구 논문, 리뷰 논문, 소논문으로 구분한다.
 - (1) (소논문) 소논문은 연구 논문의 수준으로서 인쇄하여 4쪽을 넘지 않는 논문을 소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다.
 - (2) (리뷰논문) 편집위원장은 편집담당 실무 이사 및 편집위원장의 협의와 추천으로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리뷰논문의 집필을 의뢰할 수 있다.
3. 현장과학 교육자료는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 자료, 실험실습 활동 자료, 과학 동아리 활동 자료 등을 포함한다.
4. 연구논문과 교육자료는 다른 곳에 게재된 적이 없는 독창적인 내용을 수록해야 하며, 다음의 투고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현장과학교육 연구 논문의 작성 요령)

1. 원고는 논문투고양식을 이용하여 국문으로 작성하며, 독자가 반복하였을 때 재현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쉽게 기술되어야 한다. 원고의 양은 인쇄본 6쪽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2. 논문 원고는 다음 항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1)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명(저자의 주소가 소속 기관과 다를 경우에는 그 현 주소를 각주에 표시함), 짧은 제목, 주제어.
 - (2) 초록은 100-200 단어 사이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 (3) 주제어의 개수는 한글, 영문 각각 2개 이상 5개 이하이어야 한다.
 - (4) 본문은 서론, 이론적 배경, 방법, 결과, 논의, 결론, 제언으로 나누어 기술하되 불필요한 항은 생략할 수 있다. (결과와 논의는 ‘결과 및 논의’로, 결론과 제언

제 5 조 (현장과학 교육자료의 작성 요령)

1. 원고는 국문으로 작성하며, 독자가 반복하였을 때 재현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쉽게 기술되어야 한다. 원고의 양은 인쇄본 4쪽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2. 원고는 다음 항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1)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명(저자의 주소가 소속 기관과 다를 경우에는 그 현 주소를 각주에 표시함), 짧은 제목.
 - (2) 본문은 서론, 연구 방법, 결과, 논의, 결론 및 제언으로 나누어 기술하되 불필요한 항은 생략할 수 있다. (결과와 논의는 ‘결과 및 논의’로 통합해서 기술할 수 있다.)
 - (3) 참고문헌
 - (4) 도표
 - (5) 그림

제 6 조 (투고)

1. 문서 소프트웨어: 2002년 이후에 나온 아래한글 사용을 권장한다.
2. 제출: 원고 파일은 온라인으로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표 저자의 이메일, 우편 주소와 함께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낸다. 보낼 주소는 ssj@kosss.org 이다. 인쇄물을 보낼 필요가 있으면 “서울 관악구 대학동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내 현장과학교육학회(우편번호 151-748)”로 보낸다. 원고 파일을 보낼 때 논문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한 편지를 함께 보내는 것이 좋다. 논문이 접수되면 접수 번호를 대표저자에게 보낸다. 3인의 심사를 거쳐 수정 절차를 끝내고 게재가 결정되면 저자는 논문 최종본을 문서 파일로 제출하며, 이 때 고해상도의 그림, 그래프, 도면, 표는 별도의 파일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 7 조 (참고문헌)

1. 원고에 인용된 문헌과 참고문헌에 나열된 모든 문헌은 서로 일치해야하며, 참고문헌에 한글인 경우는 저자명의 “가나다” 순으로, 영문인 경우는 저자명의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며, 한글 참고문헌을 앞에 배열한다.

2. 본문에서 참고문헌의 인용은 다음의 예에 따른다.
- (1) 2인 이하인 경우: 이규석(1998), 김창석과 문제인(2006), Park and Lee(1984), (신동희, 1999), (Lee and Kim, 1998)
 - (2) 동일 저자 및 동일 연도이며 2편 이상인 경우: 정희옥(1999a, 1999b), (정희옥, 1999b)
 - (3) 3인 이상인 경우: Epstein et al.(1977), 김정률 등(1999), (Park et al., 1989), (홍길동 외, 2010)
3. 참고 문헌 표기 양식은 다음 형식을 따르며, 글자의 기울임 또는 진하기 속성을 사용하지 않는다.
- (1) 학술지 논문
김창석, 문제인 (2006) 패러데이 법칙과 금속 탐지기. 새물리 23: 157-159.
White B and Frederiksen J (1990) Causal model progressions as a foundation for intelligent learning environments. Artificial Intelligence 24(3): 99-157.
Smith PA, Spencer CD and Jones DE (1992) Force Concept Inventory. Phys. Teach. 30: 141-158. (학술지 명을 약식으로 표현하는 경우 축약단어에 '.'을 붙인다.)
Durant JL (1995) Article title, in: Compton RG and Hancock G (Eds.), Research in Chemical Kinetics, Elsevier, Ch 2, p 25. (Chapter 등 기여 논문)
김영애 (2005) 중학교 3학년 불꽃 반응 실험 장치의 개선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단행본 및 기타 자료
전상학, 권혁빈, 나종길, 정민걸, 조은희 (2003) 유전학의 이해. 라이프사이언스.
Hewitt PA (1996) Conceptual Physics, 9th Ed. Addison Wesley. pp 15-20.
<http://www.aaas.org/news/releases/2006/1213solarbook.shtml>

제 8 조 (표와 그림)

1. 그래프, 그림, 사진은 모두 그림으로 명명한다.
2. 표와 그림은 본문에 그 위치를 표시하고 아라비아 숫자로 번호를 기입한다.
3. 그림은 별도의 파일에 고해상도의 전자출판이 가능한 형태로 제출한다. 그림 속의 문자나 숫자는 축소될 것을 고려한 크기로 기입하고, 그림에 대한 제목 및 설명은 별도의 용지에 기입한다.

제 9 조 (부록)

컴퓨터 프로그램, 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붙일 수 있다. 부록으로 실기에 너무 큰 자료는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 10 조 (단위)

1. 국제표준(SI)단위를 사용한다.
 - (1) 단위는 직립체로 쓴다.
잘못된 사례 : 100 m, 70 kg, 60 s, 20 ℃
올바른 사례 : 100 m, 70 kg, 60 s, 20 ℃
 - (2) 숫자와 단위 사이는 한 칸을 띄운다. 단 도(°), 분('), 초(")는 숫자에 붙여 쓴다.
잘못된 사례 : 70kg, 60s, 20℃, 50%, 90°
올바른 사례 : 70 kg, 60 s, 20 ℃, 50%, 90°
 - (3) 대문자, 소문자를 정확히 사용한다. (리터는 대·소문자 모두 사용)
잘못된 사례 : 100 M, 70 KG, 60 S
올바른 사례 : 100 m, 70 kg, 60 s

제 11 조 (교정)

1. 초고는 저자가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때에는 원고의 교정을 할 수 없다.

제 12 조 (게재료와 출판비)

1. 기본 원고량(인쇄본 6쪽)에 대해서는 게재료를 받지 않지만, 교신저자의 소속이 대학인 경우 10만원의 게재료를 청구한다.
2. 학술연구비 지원을 사사한 논문에 대해서 기본 원고량에 대해서 20만원의 게재료를 저자에게 청구한다.
3. 기본 원고량을 초과할 경우 1쪽당 1만원의 게재료를 저자에게 청구한다. 단,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학회지를 구독할 경우 해당 기관 소속 교신저자에게 기본 원고량 초과에 대한 게재료를 면제한다.
3. 별쇄본 30부를 교신저자에게 제공하고, 별쇄본을 추가로 요청할 경우 그 실비를 부담한다.
4. 불가피하게 아트를 사용해야 할 경우와 칼라 인쇄를 할 경우에는 저자가 그 실비를 부담한다.

제 13 조 (저작권)

대표저자는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저작권을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에 양도하여야 한다.

부칙(2007. 8. 25)

(시행일) 2007년 6월 9일 제정된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개정일)

1. 이 규정은 2008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0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1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